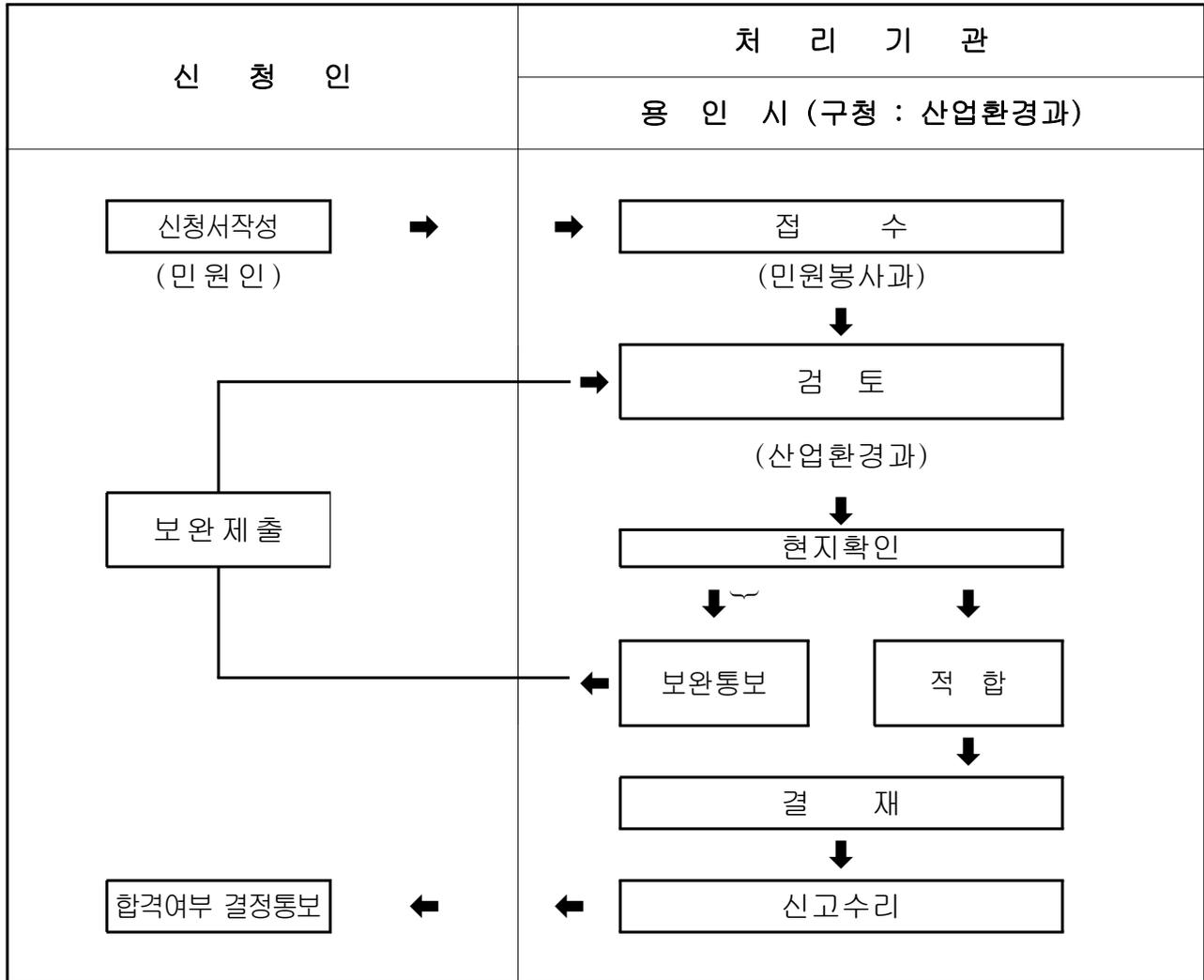


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

□ 기본 사항

주 관 부 서	구청 산업환경과	업무담당자(☎)	031-324-5283	
처 리 기 간	10일	관 련 부 서		
수 수 료	-	시	도	중앙기관
면 허 세	-			
지역개발공채	-			
기 타				
근 거 법 규	『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15조			
구 비 서 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.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.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(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) 1부 4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(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 1부 5.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.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(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7.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(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 1부 <p>※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에 따른 시설 설치준수 여부확인</p>			

□ 업무처리 흐름도



□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

○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한 설치여부 현지확인(제10조 관련)

1. 구조물의 천장·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·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2. 구조물은 토압, 수압, 자체중량,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3. 점검, 보수 및 오니·스컴·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4.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5.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,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6.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

설치하여야 한다.

7.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8.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(생물학적 처리방법, 물리·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.
9.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(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) 건조·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(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.
10.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·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11.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반장치(攪拌裝置: 섞는 장치)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,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,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.
12.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·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고, 배출시설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

○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

-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(신고) 또는 변경허가(신고)를 받은(한)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

○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신청하는 곳	시·군·구	처리부서	가축분뇨 담당부서
수수료	없음	처리기간	10일
유의사항	1.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(신고) 또는 변경허가(신고)를 받은(한)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.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		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